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095호 2015. 06. 17.(수)

차 례

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8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 
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----- 1

##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- 820호

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6월 17일

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##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 이유

- 변경된 명칭 및 제도 운영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하고 “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” 재구성 추진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개정내용

- 시스템 및 기관 명칭 변경사항 변경
  - “공직윤리관리시스템”에서 “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”으로 명칭 변경
  - “안전행정부”에서 “행정자치부”로 명칭 변경
-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개정
  - 실·과장으로 구성된 위원을 국·소장으로 상향조정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

### 3. 의견 제출

- 이 개정 규칙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감사실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(560-4073) 또는Fax(560-2705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# 4. 참고 자료

-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
- 신·구조문 대비표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자치부”로, “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거”를 “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“공직윤리관리시스템”이란”을 ““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”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실·과·소·동장 등을”을 “부서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내부윤리활동시스템”을 “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·과·소장”을 “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국·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실무위원회는 청백-e시스템 실무위원회,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,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담당”을 “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담당으로 10인”을 “장으로 10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공직윤리관리”를

“공직자 자기관리”로, “세입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10인”을 “세입, 주요 인허가 업무 부서의 장 등으로 10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라목 중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자치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나목 중 “자료”를 “자료에 대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“담당자, 조치일자, 지시사항을 입력하여야”를 “처리독려, 지시사항 입력,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 및 승인처리를 하여야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자치부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“년”을 “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,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”를 “매분기 실시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3. 지원부서

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공직윤리관리시스템”을 “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공직윤리관리”를 “공직자 자기관리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공직윤리관리시스템”을 “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공직윤리관리시스템”을 “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공직윤리관리시스템”을 “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”를 “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서”로, “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”를 “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직윤리관리시스템”을 “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직윤리관리시스템접근권한”을 “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접근권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공직윤리관리시스템”을 “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공직윤리관리시스템”을 “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직윤리관리시스템”을 “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3호 중 “공직윤리관리시스템”을 “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자치부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   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자율적 내부통제활동”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 율화를 위하여 <u>안전행정부</u> 에 서 마련한 청백-e시스템, 자기 진단 제도, <u>공직윤리 관리시스 템에 의거</u> 지방자치단체가 스 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, 평가, 홍보, 교육 등 소 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 동을 말한다.	2.----- ----- ----- <u>행정자치부</u> ----- ----- <u>공직자 자기관 리 시스템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3. · 4. (생   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5. “ <u>공직윤리관리시스템</u> 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 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 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 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	5.“ <u>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</u> ”이 <u>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6. · 7. (생   략)	6. · 7. (현행과 같음)
8. “실무부서”란 자율적 내부통 제를 수행하는 <u>실 · 과 · 소 ·</u>	8.----- ----- <u>부서를</u> -----

동장 등을 말한다.

9. ~ 12. (생략)

제3조(운영방향) ① 자율적 내부 통제는 청백-e시스템, 자기진단 제도, 내부윤리활동시스템으로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4조(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) ① (생략)

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·과·소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5조(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)

① (생략)

② 실무위원회는 청백-e시스템 실무위원회,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,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.

1. 청백-e시스템 실무위원회 :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,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

-----.

9. ~ 12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운영방향) ① -----  
-----  
-----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국·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-----  
-----  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실무위원회는 청백-e시스템 실무위원회,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,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-----  
-----  
-----

시스템, 지방재정관리시스템, 세외수입정보시스템, 지방인사정보시스템, 서울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.

2.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: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,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으로 10인 이내로 한다.

3.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: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, 인사, 회계, 세입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10인 이내로 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7조(업무지정)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,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

1. 감사부서

가. ~ 다. (생략)

라. 청백-e 시스템 기반 구축·운영을 위한 안전행정부, 인천광역시, 인천광역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장-----.

2.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장으로 10명-----  
-----.

3.공직자 자기관리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세입, 주요 인허가 업무 부서의 장 등  
으로 10명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업무지정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-----  
-----행정자치  
부-----

시 서구와의 협약  
 마. ~ 사. (생략)  
 2.·3. (생략)  
 4. 실무책임자  
 가. (생략)  
 나. 청백-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를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.  
 다. (생략)  
 5. 관리자  
 가. (생략)  
 나. 청백-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, 조치일자, 지시사항을 입력 하여야 한다.  
 다. (생략)  
 제9조(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) 구청장은 청백-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·변경·삭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  
 제11조(자기진단) ① (생략)

-----  
 마. ~ 사. (현행과 같음)  
 2.·3. (현행과 같음)  
 4.-----  
 가. (현행과 같음)  
 나.-----  
 -----  
자료에 대한-----  
 -----.  
 다. (현행과 같음)  
 5.-----  
 가. (현행과 같음)  
 나.-----  
 -----  
 -----처리독려,  
지시사항 입력, 조치결과  
에 대한 확인 및 승인처리  
를 하여야--.  
 다. (현행과 같음)  
 제9조(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) -  
 -----  
 -----  
 -----행정자치부  
 -----  
 -----.  
 제11조(자기진단) ① (현행과 같

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(Self-Check List)에 의거 실무담당자, 실무책임자, 관리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 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2조(업무지정) ① 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,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

1. 감사부서

가.·나. (생략)

다.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

2. 실무부서

가.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, 하반기는 1

음)

② -----  
-----  
따라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업무지정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2.-----

가.-----  
-----  
매분기 실시한다.

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  
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나. (생략)

3. 정보화부서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4장 공직윤리관리시스템

제15조(시스템 운용)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6조(업무지정)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,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

1. 감사부서

가.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

나.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

다.·라. (생략)

2. 실무부서

나. (현행과 같음)

3. 지원부서

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4장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

제15조(시스템 운용) ① -----  
-----  
-----공직자 자기관리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업무지정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-----

가.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-----  
-----

나.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-----  
-----

다.·라. (현행과 같음)

2.-----

가. 실무부서장은 개인별·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(단, 징계 등 공무원 신상 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)

나.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,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제출

3. (생략)

제17조(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) ① 구청장은 청백-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청백-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

② 청백-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청백-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접근권한에 대한 관리

가.-----  
-----공  
직자 자기관리 시스템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<삭제>

3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) ① -----  
-----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
서-----  
-----  
-----공직자 자기  
관리 시스템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공직자  
자기관리 시스템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공직자  
자기관리 시스템 접근권한-----

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,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된다.

④ 구청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8조(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 대책) ① 구청장은 청백-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,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청백-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,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,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,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9조(평가)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

-----  
-----  
-----.

④ -----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-----  
-----  
-----.

제18조(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 대책) ① -----  
-----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9조(평가) ① -----  
-----  
-----

<p>야 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<u>공직윤리관리시스템</u> : 윤리활동 창의성, 개인별 · 부서별 윤리활동 실적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<u>안전행정부</u>의 확인 ·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.</p> <p>제21조(제도지원)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 개선 ·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<u>안전행정부장관</u>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</p>	<p>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u>행정자치부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21조(제도지원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행정자치부장관</u>-----</p> <p>-----.</p>
---	--